

2017년 4/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서

1. 일 시 : 2017. 12. 27.(수) 13:00

2. 장 소 : 공단 회의실

3. 참 석 : 총 10명(사측 5, 노측 5)

▷ 사 측 : 이사장, 경영지원실장, 기획예산팀장,
총무인사팀장, 재무회계팀장

▷ 노 측 : 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, 고문, 대의원

4. 개최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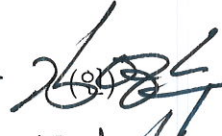
안 건	주 요 내 용
I.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	
① 통상임금 항목 조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·조합 : 직급별 기준호봉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던 기존의 공단 규정 내지 관행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판례 등에 위배되므로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·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합의하여 후속 조치
② 인건비 증액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: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개선 및 연차축진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수당 발생 최소화 관련 노·사 합의를 통해 정부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조합 : 정부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경영평가 감점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8년 임금협상을 통해 충분한 검토 필요
II.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 관련	
① 유급휴일 운영(창립기념일)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: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 조합 : 「상위법 우선의 원칙」에 따라 단체협약은 규정에 우선하므로, 공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
② 퇴직금 산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: 예산편성지침 및 유권해석에 의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자체평가급(100%)만 포함·산정 조합 :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저하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단 의견 수용 불가
③ 공로연수자 활동비 지급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: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수당 및 해외연수 경비 미지급을 위한 내부지침 개정 필요 조합 :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동의
III. 직원 복지 관련	
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: 복지카드 혜택 확대를 위해 복지카드 운영사 입찰계약 추진 필요. 일정기간 복지카드 사용 중단에 대해 노조원의 이해 요청 조합 : 환급시스템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, 카드 사용 중단에 대해 노조원들에게 심도있게 설명하겠음.

사 측 위 원

노 측 위 원

이 사 장

김 영 수



위 원 장

최 광 식



경영지원실장

이 주 한



부위원장

윤 성 환



기획예산팀장

최 진 욱



사무국장

김 동 우



총무인사팀장

장 귀 봉



고 문

성 창 승



재무회계팀장

방 준 호



대 의 원

강 동 천

